

2026년 3월말 기준 사 업 보 고 서

2026년 01월 01일 부터
2026년 03월 31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26년 4월

동청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희군

목 차

I. 주요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 가. 총회(대의원회)
 -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주요사업추진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4. 기타사업

III. 주요사업추진실적

IV. 재무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I. 주 요 현 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년월일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6년 01월 30일	41명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안)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5년도 제20기 결산보고서 및 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비상임감사, 사외이사)선출의 건

나. 이사회

개최년월일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6년 1월 16일	10명	의안 제1호 : 간부직원 임면의 건
		의안 제2호 : 정관변경(안) 심의의 건
		의안 제3호 : 2026년 차입금 최고한도 승인의 건
		의안 제4호 : 2026년 경제사업 무이자 외상기일 책정의 건
		의안 제5호 : 2026년 이용고 배당사업 품목 및 기준금액 결정의 건
		의안 제6호 : 2026년 경제사업운전자금 지원방침 결정의 건
		의안 제7호 : 2026년 교육지원사업 영농자재지원 지급기준 결정의 건
		의안 제8호 : 2026년 정책보험 조합원 지원금액 결정의 건
		의안 제9호 : 교육지원사업비 집행방침 결정의 건
		의안 제10호 : 2025년도 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심의의 건
2026년 2월 24일	10명	의안 제1호 : 조합원 자격심사 및 가입 · 탈퇴 승인의 건
		의안 제2호 : 임원자기거래 제한 승인의 건
		의안 제3호 : 고정자산 취득 승인의 건
		의안 제4호 : 2026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의 건
		의안 제5호 : 내부조직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제6호 : 자금세탁방지 업무 매뉴얼 일부개정의 건
		의안 제7호 :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 지정의 건
2026년 3월 23일	10명	의안 제1호 : 조합원 자격심사 및 가입 · 탈퇴 승인의 건
		의안 제2호 : 농협중앙회 출자 승인의 건
		의안 제3호 : 업무용고정자산취득(무형자산) 승인의 건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본점 영업장	38362	경북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35	054-372-3661~2	
지점 영업장	38367	경북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 4713	054-372-8661~2	
본점 자재센터	38362	경북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35	054-371-3667~8	
본점 유통센터	38360	경북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400	054-372-3644	
본점 하나로마트	38362	경북 청도군 금천면 금천로 35	054-372-3663	
지점 하나로마트	38367	경북 청도군 운문면 청려로 4713	054-372-8054	

나.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분기	당분기	증감내역	비 고
임원	조	합 장	1	1	0	
	(비 상 임)	감 사	2	2	0	
	상	임 감 사	0	0	0	
	(비 상 임)	이 사	6	6	0	
	상	임 이 사	0	0	0	
	사	외 이 사	1	1	0	
	소 계 (A)		10	10	0	
정규직	M	급	0	0	0	
	3	급	3	4	1	
	4	급	6	5	-1	
	5	급	7	5	-2	
	6	급	2	3	1	
	7	급	0	0	0	
	기	능 직	7	7	0	
	생	산 업 무 직	0	0	0	
	업	무 직	0	0	0	
	소 계 (B)		25	24	-1	
비정규직	계	약 직	0	0	0	
	기	간 제 근 로 자	4	5	1	
	시	간 제 업 무 보 조 원	0	0	0	
	파	트 타 이 머	0	0	0	
	촉	탁	0	0	0	
	소 계 (C)		4	5	1	
총 계 (B + C)			29	29	0	
총 합 계 (A + B + C)			39	39	0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제47조	제47조(대의원의 해임) ⑤ 제57조제3항은 대의원의 해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임원"은 "대의원"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로 한다. <개정 2009.11.11.>	제47조(대의원의 해임) ⑤ 제57조제4항은 대의원의 해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련조항 변경
제48조	제48조(이사회) ⑥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⑨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⑪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이사회) ⑥조합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감사 또는 상임이사가 회의목적 및 부의안건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조합장이 제6항에 따라 소집이 요구된 이사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 상임이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⑨이사회는 제49조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⑪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상임이사 내용추가
제49조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종략 -	제4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종략- 12. 상임이사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항 13.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4. 기타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임이사 내용추가
제51조	제51조(임원의 정수)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상임으로 한다) : 1명 2. 조합원인 이사 : 6명 3. 조합원이 아닌 이사 : 1명 4. 감사 : 2명	제51조(임원의 정수)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상임으로 한다) : 1명 2. 상임이사 : 1명 3. 조합원인 이사 : 6명 4. 조합원이 아닌 이사 : 1명 5. 감사 : 2명	상임이사 내용추가 및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제52조	제52조(임원의 직무) [조합장을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 조합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하 중략 ~	제52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3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2. 제5조제1항제4호 및 관련 부대사업(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관련사업 포함) ②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 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중략 ~ ⑧ < 사 ㅏ ㅓ 제 >	조합장 및 상임이사 업무 집행 권한 배분
제54조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중략 ~	제54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② 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으로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대상자를 결정한다. 1. 조합장 1명 2.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명 3. 조합장이 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4.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③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중략 ~	상임이사 선출방식 추가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제55조	제55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 2년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 종략 ~ ④보궐선거(조합장의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09.11.11., 2014.11.12.> ~ 종략 ~	제55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 2년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전에 재임중인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선거기간(선거일공고일 또는 추천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인 경우는 당선공고일을 임기개시일로 하고,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개정 2024.1.31.> ~ 종략~ ④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 또는 선출될 예정이었거나 임기가 개시되었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024.1.31.> ~종략~	단서조항 삭제 및 보궐선거 또는 재선에 따른 잔여임기 기준 명확화
제57조	제57조(임원의 해임) ~ 종략 ~ ③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 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7조(임원의 해임) ~ 종략 ~ ③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이사회 의 요구로 상임이사를 해임하려면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 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임이사 해임안 신설
제60조	제60조(직원의 임면)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명과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60조(직원의 임면) ① 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상무 3명 이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에는 필요에 따라 상무 1명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 소관 간부직원의 임면은 상임이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직원의 임면 제청권 반영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제61조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전무는 조합장의 명을 받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며, 상무는 전무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 하고, 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장이 정하는 상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1조(간부직원의 직무) 상무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상임이사 내용추가
부칙		부 칙(2026.1.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적용하되, 상임이사는 조합장 임기개시일 전에 선출할 수 있다.	경과규정 부칙제정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1. 교육지원사업

가. 2025년 제20기 결산총회 개최

- 2026년 1월 30일 동청도농협 대회의실 (41명 참석)
- 비상임감사 선출(박영곤, 김필곤)

나. 산사랑 산악회 총회 개최

- 2025.12.19. 본점 2층 대회의실, 해산결의

다. 파크골프 동호회 총회 개최

- 2025.12.19., 본점 2층 대회의실, 임원선출 외

라. 대의원 후보자 등록(2026년 1월 13일 ~ 14일, 2일간 접수)

- 2026.1.23. 대의원 52명중 50명 선출

마. 마트활성화사업 조합원 하나로마트 이용권 배부

- 5만원, 조합원 생일에 맞춰 매월 대상자 선정후 배부

바. 조합원 환원사업 비료, 건열치 배부

- 25년 공급물량과 동일, 12,165포

사. 영농회별 현장 운영의 공개 실시

- 26. 3. 4 ~ 3.12(금천면, 운문면)

아. 경북농협 으뜸 조합장상 시상

- 26.3.9 경북지역본부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6년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전년도말 (E)	전년도말 대비	
						증감	성장률		증감	성장률
경제사업		23,850	2,338	9.80	2,427	-90	-3.69	23,296	-20,958	-89.97
판 매		15,724	963	6.13	1,074	-111	-10.33	15,580	-14,617	-93.82
구 매		3,476	360	10.35	319	41	12.98	3,363	-3,003	-89.30
마 트		3,931	989	25.16	1,024	-35	-3.45	3,943	-2,954	-74.92
가 공		0	0	0.00	0	0	0.00	0	0	0.00
기 타		718	25	3.54	10	15	154.64	410	-384	-93.80
상 호 금 융 예 수 금	잔 액	124,211	120,311	96.86	117,810	2,500	2.12	120,906	-596	-0.49
	평 잔	121,417	120,603	99.33	117,058	3,545	3.03	118,131	2,472	2.09
상 호 금 융 대 출 금	잔 액	93,800	91,061	97.08	85,035	6,026	7.09	88,769	2,292	2.58
	평 잔	91,486	88,173	96.38	84,747	3,426	4.04	85,871	2,302	2.68
보 험 료		3,444	421	12.22	329	92	28.12	3,566	-3,145	-88.19

※ 경제사업 기타실적은 생물자산, 창고, 이용, 운송 매출액 및 수수료 실적 등의 합계임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5,102	I. 유동부채	13,854
1. 현 금	690	1. 외상매입금	70
2. 외상매출금	206	2. 단기차입금	10,550
3. 재고, 생물자산	2,964	3. 기타유동부채	3,234
4. 기타 유동자산	1,242	II. 금융업예수금	120,311
II. 금융업예치금	36,965	III. 금융업차입금	9,064
III. 금융업대출채권	96,956	IV. 보험(공제), 농작물 보험부채	
IV. 보험(공제), 농작물 보험자산		V. 비유동부채	50
V. 비유동자산	17,365	1. 장기차입금	
1. 투자자산	8,151	2. 기타비유동부채	50
2. 유형자산	9,213	부채 합계	143,279
3. 무형자산		I. 출자금	7,427
4. 기타비유동자산	1	II. 자본잉여금	2,246
		III. 자본조정	-2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8
		V. 이익잉여금	3,606
		자본합계	13,109
자산총계	156,388	부채와 자본총계	156,388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5년 3월말 (A)	'26년 3월말 (B)	증감 (B-A)
영업수익	3,254	3,163	-91
영업비용	2,173	2,134	-39
매출총이익	1,081	1,030	-52
신용사업	821	830	9
경제사업	260	200	-60
판매비와 관리비	1,012	1,103	90
영업손익	69	-73	-142
교육지원사업준비	69	59	-10
영업외손익	242	218	-25
법인세차감전손익	242	86	-156
법인세비용	0	-3	-3
당기순손익	242	89	-153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